

수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613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양창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병철

변론 종결2023. 6. 27.

판결 선고2023. 7.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망 C 사이의,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38096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20. 8.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92662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20.
8.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주소 : 인천 강화군 F)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소외 E(주소 : 수원시 G건물, H호)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소외 I, J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38096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8. 24. 접수 제92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C 사이의 대출계약 등

(1)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K(계좌번호 1 생략)	30,000,000원	2014. 2. 11.	2020. 2. 13.
L(계좌번호 2 생략)	100,000,000원	2018. 3. 29.	2020. 3. 29.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48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0. 8. 12. 'C은 원고에게 133,492,404원과 그 중 129,945,3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과 피고 B 사이의 양도계약 등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M	주식회사 D	2016. 5. 3.	70,000,000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	E	E	2017. 12. 21.	90,000,000

(2) C은 2020. 8. 20.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2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사망 및 상속관계

C은 2022. 2. 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상속을 포기함)와 자녀인 I, J이 있는데, 자녀인 I과 J에 대하여는 2022. 4. 29. 각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는 결정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전시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사회복지법인 N(변경 전: 사회복지법인 O, 이하 'N'라 한다)에

대한 채권 1,420,311,420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②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 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C의 채무초과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채무초과상태

(1) 채무초과상태 인정 앞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가액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액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채무, 소외 P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판결금채무 177,230,053원, 피고에 대한 채무 171,635,712원 등¹⁾ 이 각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가 2017. 5. 17. 및 2021. 11. 25. 거듭하여 C에게 모두 1,420,311,4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 실제 N는 C 명의의 A 및 Q 예금계좌에 2019. 5. 16. 10,000,000원, 2019. 9. 11. 5,000,000원, 2020. 1. 22. 5,000,000원, 2020. 4. 8. 5,000,000원, 2020. 6. 16. 5,000,000원, 2020. 10. 27. 3,000,000원, 2020. 11. 2. 3,000,000원, 2020. 11. 24. 5,000,000원, 2021. 9. 3. 5,000,000원, 2021. 12. 7. 10,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 즉 C 계좌로 입금된 합계 5,600만 원이 C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전체 채권액의 약 4%에 불과한 점, C 등은 N에 대하여 그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물적·인적 담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C 등은 2021. 12. 7. 이후로는 N로부터 더는 어떠한 채무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N도 별다른 자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N에 대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와 소외 E에게 각 채권의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는 I, J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민철

별지

1) 약속어음 부도와 관련하여 그 배서인으로서 약 2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참조).